

# 기술본부 및 사장직속부서 종합감사 결과

## I. 감사개요

### 1. 감사목적

본 감사는 기술본부 및 사장직속부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업무오류 및 비능률적인 요소를 시정·개선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사 경영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코자 실시하였음

### 2. 감사대상 및 방법

가. 감사대상 : 안전관리처, 차량운영처, 기술운영처, 2호선건설지원처  
종합관제처

나. 감사방법 : 서면·현장 감사실시

### 3. 감사범위 : 2018년 10월 ~ 2020년 9월까지 추진업무 전반

### 4. 감사중점사항

가.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사업의 이행실태

나. 업무 수행시 법령·사규 준수여부 및 불합리한 관행 유무

다. 물품구매, 검수, 운용 등 자산관리업무 적정성

라. 안전교육, 훈련 등 안전관리업무 추진실태

마.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등 재무관련업무 적정성

바. 외부기관 점검 지적사항 적정이행 여부 등

### 5. 감사기간 및 인원

가. 감사기간 : 2020. 10. 12. ~ 11. 6. (기간중 19일)

나. 감사인원 : 감사실장 외 6명

## II. 감사결과

### 1. 지적사항 총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		비고
계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시정	계	회수	
16	2	4	6	3	1	1 (791,390원)	1 (791,390원)	

### 2. 지적사항 세부내역

일련 번호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1	<p><b>■ 하자관리 업무 소홀</b></p>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우리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 보수조치 관리지침’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해야하며, 하자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발급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팀에서는 하자대장에 등록된 일부 계약건에 대하여 하자검사(정기,최종)가 누락하였으며, 최종검사 완료 후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등 하자관리 업무에 소홀함</p> <p><b>【조치요구 사항】</b></p> <p>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요구함</p>	주의

연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2	<p>■ <b>계약관련 구비서류 개인정보 관리 소홀</b></p> <p>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p> <p>그런데 ###팀, \$\$\$\$팀, @@@@팀, %%팀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각 부서별 공사 및 용역, 물품 계약관련 서류를(착공(착수) 및 준공시 인감증명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제출받으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해야 함에도 개인별 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를 노출된 상태로 제출받고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상세히 기록된 상태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함</p> <p><b>【조치요구 사항】</b></p> <p>계약관련 구비서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업무수행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요구함</p>	주의
3	<p>■ <b>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미흡</b></p> <p>현재 우리공사는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이며, 상위 규정 및 지침인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에 정보화 용역사업 추진시 정보보안 관리사항등이 명시 되어있음</p> <p>###팀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했던 11개의 정보화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의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이행되었으나 「디지털 복합기 임차용역」 등 일부사업에서 보안서약서에는 자필서명 누락, 보안교육 내용 기준과 상이, 업체인력에 대한 보안점검도 미실시, 보안확약서 시기 불일치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음</p> <p><b>【조치요구 사항】</b></p> <p>폐쇄化·파편化된 상위 외부 규정 및 지침을 우리공사 현실에 맞게, 내부규정이나 지침으로 표준화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이 정보화 용역사업 수행 시 이행해야할 보안관리 세부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p>	통보

연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4	<p>■ <b>중점관리대상자 관리업무 미흡</b></p> <p>우리공사 철도안전관리규정 제158조, 제159조에서는 특정업무 종사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자에게 월 1회 이상 면담교육을 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이에, 중점관리대상자 관리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팀에서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지정·해지 및 면담교육 실시 방법이 서로 상이하야 통일할 필요가 있음</p> <p><b>【조치요구 사항】</b></p> <p>중점관리대상자 지정·해지시 전 팀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를 통하여 통보하여주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면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매달 면담교육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p>	통보
5	<p>■ <b>운행선 작업 안전관리 강화</b></p> <p><b>가. 음주여부 확인방법 개선</b></p> <p>「선로지장취급 내규」 제145조에는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현장의 종사자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작업책임자, 철도운영안전관리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안전관리규정」 제146조에는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음주측정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규정」 제154조(검사 내용의 기록유지)에 따라 음주측정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p> <p>그런데, 일부팀에서는 음주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결과표에 불량 또는 양호로 표기하고 있었으며, 철도운영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에 대해서는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았음</p> <p>이에 철도운영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가 음주여부 확인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작업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을 음주측정기를 통해 기록·관리 하고, 추가적으로 검사 시기, 검사자, 음주자 발생 시 조치 등 구체적인 운행선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함</p> <p><b>나. 철도운영안전관리자 신규 양성 확대</b></p>	개선

연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철도안전관리체계 매뉴얼」 11.7.6(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가.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다.(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세무 업무 부여)에는 공사가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할 때에는 자체교육(최소8시간, 3년이상 경력자 4시간) 수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담당자를 지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p> <p>이에 대해 신규 직원에 대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실시 유무는 업무 수행 자격을 득한 직원 현황 등 각 팀의 사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나, 휴가 등에 따른 최소 근무인원 및 운행선 작업구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 신규 직원에게 필수적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체 양성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p> <p><b>【조치요구 사항】</b></p> <p>음주측정 대상자, 검사 시기, 기록·관리 방법, 음주자 발생 시 조치 등을 반영한 운행선 작업 안전관리 강화 대책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p> <p>운행선 작업 안전관리 강화 대책 계획에 철도안전관리체계 매뉴얼 11.7.6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나목의 교육항목 및 시간, 교육강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신규 양성 내용을 포함하시기 바람</p>	
6	<p><b>■ 관제설비 전문 업체 정밀점검 통합 발주</b></p> <p>&amp;&amp;&amp;&amp;처에서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운영상태 파악, 감시 및 통제를 위해 전력관제 SCADA설비와 통신관제 디지털전송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설비 유지관리 이행 계획에 따라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 업체 정밀점검을 각 2회/년 실시하고 있음</p> <p>그런데, &amp;&amp;&amp;&amp;처에서는 전기 분야와 통신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을 뿐 점검항목과 방법이 같은 시스템 제어 및 감시를 위한 동일 장비인 SCADA설비 서버와 디지털전송설비 서버의 전문 업체 정밀점검을 각각 따로 실시하고 있음</p> <p>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분야(전기, 통신)는 상이하더라도 공통적인 기능을</p>	개선

연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가지고 점검 항목 및 방법이 같은 동일 장비(서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문 업체 정밀점검에 대해 개별 발주가 아닌 행정력 간소화(발주 4회 → 2회) 및 사업비 예산절감(500천원/년)을 할 수 있는 통합 발주가 타당하다고 사료됨</p> <p><b>【조치요구 사항】</b></p> <p>전력관제와 통신관제에서 운영중인 SCADA설비 서버 및 디지털전송설비 서버의 전문 업체 정밀점검을 행정절차 간소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개별 발주가 아닌 통합 발주를 추진하시기 바람</p>	
7	<p><b>■ 계약변경 관련 문서 결재절차 개선</b></p> <p>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서 계약 변경된 내부결재문서 결재 절차 기준이 없어서 유사한 내용의 전결기준을 적용하여 결재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변경된 계약에 대한 결재 절차 기준이 없으면 최초의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함 그런데 일부팀에서는 최초 기안한 내부검토 문서의 결재권자와 다르게 팀장 또는 부서장 결재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p> <p><b>【조치요구 사항】</b></p> <p>\$\$\$팀에서는 계약 변경에 관한 결재절차 기준을 수립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p> <p>**팀, @@@@팀에서는 계약 변경에 대한 개선 사항이 수립되면 담당직원에게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람</p>	개선 통보
8	<p><b>■ 통합경영정보 고정자산 관리 프로그램 개선</b></p> <p>통합경영정보 고정자산관리 시스템에서는 자산번호, 취득구분, 취득일자, 취득금액, 규격, 내용연수, 위치, 감가상각 등 대부분의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만 예비품의 구분 및 사용여부에 대한 사항이 시스템에 미 반영되어 전산으로 예비품에 대한 사용실적과 현재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p> <p>고정자산의 예비품은 취득한 후 실제 사용과 관계없이 출납과 동시에 내구연한이 경과될 때까지 감가상각을 실시하기에 전산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산에 남아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고정자산은 고정 부착되어 실제 운용중인 자산과 예비품 성격의 자산이 혼재되어 관리되고</p>	개선

연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점이 이유라고 판단되어 짐</p> <p>또한, 실제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 시 예비품의 사용여부 등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사용여부를 파악하는 등 재물조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p> <p>따라서, 효율적인 재물조사 시행 및 예비품에 대한 사용실적과 현재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기에 적정 수량을 수급함으로써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고정자산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p> <p><b>【조치요구 사항】</b></p> <p>###팀에서는 고정자산관리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인 \$\$\$\$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물품운용자가 시스템에서 예비품을 구분하고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시기 바람</p>	
9	<p><b>■ 차량기지 건물 옥상 고정식 사다리 개선</b></p> <p>용산 및 옥동차량기지는 종합관리동 등 건물의 옥상을 점검하기 위한 시설로 각각의 건물 외벽에 고정식 사다리(이하“사다리”라 한다.)가 26개 설치되어 있음</p> <p>건물의 옥상 점검시 추락방지를 위하여 등받이울을 설치하여(26개중 4개는 기설치) 우리공사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p> <p><b>【조치요구 사항】</b></p> <p>담당팀에서는 용산 및 옥동차량기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 설치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개선하시기 바람</p>	권고
10	<p><b>■ 기록물 등록, 이관 및 관리 보완대책 마련</b></p> <p>우리공사 기록물 관리 내규 제3조 3호에 의하면 △△팀은 기록물 관리부서로서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기록물의 관리가 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각 부서에서 생산한 전자문서의 현황을 보면 개통초기인 2004년부터 지금</p>	권고

연번 연월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까지 총 3,014,860건을 생산했으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생산한 非전자문서는 19,780건이다. 감사대상 기간인 2018~2020년간 생산된 非전자문서는 4,051건으로 이 중 162건의 非전자문서의 원본이 분실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록물 관리 및 보관에 다소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었음.</p> <p>문서분실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담당직원이 非전자문서를 수동 등록 또는 종이문서접수를 한 후 원본문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폐기했거나, 담당자의 인사이동 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이동 시 원본문서를 분실하는 경우임.</p> <p>이는 현재 우리공사의 기록관리시스템이 미도입되어 발생하는 시스템미비의 문제로 판단되며, 보관장소 점유, 문서 분실위험 상존, 서버의 저장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공사의 재정여건상 기록관리시스템 관련예산 확보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p> <p><b>【조치요구 사항】</b></p> <p>△△팀에서는 기록물 관리시스템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관련예산 확보에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 전자화 문서로 인증되는 종이문서 접수기능을 활용, 기록물 관리·보관 자체 보완대책의 수립과 전 직원 대상의 재발 방지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p>	
11	<p><b>■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b></p> <p>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우리 공사에서는 코로나19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p> <p>그런데, 본사와 차량기지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실시, 출입자 명부 관리,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 홍보, 사업장 내(문 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청결·소독 유지, 손 소독제 비치, 승강기 구분 이용 등 사업장 내 감염병 확산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도급사업 관련 역사 기능실(전기실, 통신기계실, 설비기계실</p>	권고

연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등) 또는 터널에 출입하는 외부 작업자에 대해서 일부 대형 공사(국비사업)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감염병 확산방지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p>코로나19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급사업에 따른 주간 또는 야간에 역사 기능실(전기실, 통신기계실, 설비기계실 등)과 터널에 출입하는 외부 작업자에 대해 건강상태(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및 해외 여행력 등을 확인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보고체계, 현장소독, 당일 작업시행 여부 등 관리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p> <p><b>【조치요구 사항】</b></p> <p>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도급사업(수리, 개량, 교체 등) 추진 시 역사 기능실과 터널에 출입하는 외부 작업자에 대해 건강상태(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을 체크하여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및 관리대응 절차 방안을 팀 실정에 맞게 마련하시기 바람</p>	
12	<p><b>■ 국·내외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 절차 마련</b></p> <p>OOOOO팀에서는 서울 **선 경전철 운영사업권 입찰에 A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해외철도 시장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호선 운영 기술력을 활용한 ▲▲▲ ▲▲▲ 1호선 전동차 중정비 기술용역 사업을 수주하였음</p> <p>하지만, 경전철 운영사업 및 해외 기술용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동조합과 간담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으며, **선 경전철 운영사업의 경우 조직 및 인력 구성, 사업비 분석, 인력투입 등 운영사업 참여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사업 추진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하였음</p> <p>또한, 입찰제안서 작성을 위한 T/F를 주요부서(조직 총괄부서 등)를 제외한 일부 팀만으로 구성하여 **선 경전철 운영사업 공동참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외 기술용역은 계약 체결 후 과업수행(작업절차서 작성 등)을 위한 T/F만을 구성하였음</p> <p>그 결과, 당초 서울 **선 경전철 운영사업 신규채용 인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변경이 있었으며, 노동조합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음</p>	권고

연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따라서, 국·내외 도시철도·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T/F 구성 시 관련 부서 확대 적용, 노사 협의체 구성, 재무분석, 사업제안서 작성 등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실정임</p> <p><b>【조치요구 사항】</b></p> <p>국·내외 도시철도·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 시 사업 발굴, T/F 및 노사 협의체 구성, 적정성 검토, 업무협약(MOU) 체결, 재무분석, 사업제안서 작성, 市 협의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표준화하시기 바람</p>	
13	<p><b>■ 우수기관사 선발제도 개선방안 마련</b></p> <p>으뜸기관사 선발대회 평가위원 선정이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평가위원 모두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평가항목의 특성상 1~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직렬 직원으로 선정되어 있어 내부의 의도대로 으뜸기관사가 선발될 우려가 있어 평가위원으로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등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p> <p>안전지킴기관사 선발제도의 평가분야 중 설문평가(60%)는 본래의 평가의도와 다르게 피평가자와의 친분 또는 인기를 반영하여 그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과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선발제도의 평가분야 중 하나의 평가분야의 결과가 선발제도 결과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객관적이고 다양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반영비율 조정을 통하여 선발제도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함</p> <p><b>【조치요구 사항】</b></p> <p>☆☆팀에서는 우수기관사 선발제도의 평가위원 구성변경 및 평가항목 추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한 우수기관사 선발제도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p>	권고

연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14	<p>■ <b>미사용 물품 관리방안 마련</b></p> <p>□□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기구비품 중 일부 물품이 취득 후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현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p> <p>이에 □□팀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은 관리전환이나 불용결정을 통해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나 추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p> <p><b>【조치요구 사항】</b></p> <p>□□팀에서는 관리중인 물품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품, 사용계획이 없는 물품, 추후 사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p>	권고
15	<p>■ <b>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소홀</b></p> <p>「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같은 기준 제8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p> <p>해당팀에 안전관리비로 인하여 초과 지급된 공사비를 즉시 회수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관련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초과 지급된 총 791,390원을 감사기간 내 회수조치 완료함</p> <p><b>【조치요구 사항】</b></p> <p>현지시정 완료사항으로, 향후에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조치함</p>	현지시정 회수